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96,449,973	26,893,499
일반회계	790,772,930	23,723,188
특별회계	105,677,043	3,170,311
공기업특별회계	72,633,449	2,179,003
상수도사업	22,340,035	670,201
하수도사업	50,293,414	1,508,802
기타특별회계	33,043,594	991,308
의료급여기금	2,247,930	67,4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317,283	39,518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55,716	7,6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71,189	8,136
수질개선관리	8,311,714	249,351
농공지구조성	3,613,462	108,404
중소기업육성자금	5,903,137	177,094
농업발전기금	11,123,163	333,69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94,124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